편입학 시행세칙<개정 2018.10.22.>

제정 2005. 7. 1	개정 2006. 5. 1	개정 2018. 10. 22
개정 2005. 9. 1	개정 2012. 2. 1	개정 2019. 06. 26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수원여자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학칙 제25조에 따른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모집 시기 및 지원 자격) 편입학의 모집 시기 및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2.2.1., 2018.10.22..>

1. 모집시기 <개정 2018.10.22.>
   가. 전기 편입학 : 2학년 및 3학년 1학기
   나. 후기 편입학 : 1학년 2학기
2. 지원 자격 <개정 2018.10.22., 2019.6.26.>

구분		지원자격
전기	2학년 1학기	가.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교 졸업(예정)자 나. 전문대학에서 1학년(2개 학기) 이상 수료하고 36학점 이상 이수한 자 중 제적(자퇴 등)한 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이상 경과한 자 다. 4년제 대학교에서 1학년(2개 학기) 이상 수료하고 36학점 이상 이수한 자 라. 시간제 등록 또는 학점은행제에 따른 전문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 마. 기타 법령에 따라 각 목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- 단, 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는 취득학점이 최소 40학점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
	3학년 1학기	가.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교 졸업(예정)자 나. 전문대학에서 2학년(4개 학기) 이상 수료하고 72학점 이상 이수한 자 중 제적(자퇴 등)한 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이상 경과한 자 다. 4년제 대학교에서 2학년(4개학기) 이상 수료하고 72학점 이상 이수한 자 라. 시간제 등록 또는 학점은행제에 따른 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 마. 기타 법령에 따라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- 단, 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는 취득학점이 최소 80학점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
후기	1학년 2학기	가. 전문대학 졸업자 나. 대학 졸업자 다. 기타 동등 이상 학력 소지자 (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제 등 : 학위 취득자에 한함)

제3조(전공지원범위) 편입학의 전공지원범위는 본 대학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 <개정 2018.10.22.>

제4조(선발방법) ① 편입학자 선발은 본 대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모집정원 내에서 선발한다.<개정 2018.10.22.>

② 전적대학의 학적사항에 허위가 발견될 때에는 학적이 상실되며, 기납부한 등록금 및

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19.6.26.>

제5조(학점인정) ① 편입학자에 대하여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을 심사하여 학기당 18학점까지 인정한다. 다만,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<개정 2012.2.1., 2018.10.22.>

② 편입학자의 인정과목에 대해서는 재수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.

③ 전적대학의 성적은 제1항의 모집시기별 학점인정 범위 내에서 이수구분에 따라 교양, 전공, 일반선택으로 각각 인정한다. <신설 2006.5.1.><개정 2018.10.22.>

④ 전적대학에서 교양으로 취득한 성적은 교양으로 인정한다. <신설 2006.5.1.><개정 2018.10.22.>

⑤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편입학 학과에 전공으로 개설된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, 학과의 심의에 따라 전공으로 인정한다. <신설 2006.5.1.><개정 2018.10.22.>

⑥ 교양과 전공 이외의 인정학점에 대하여는 일반선택으로 구분하여 인정한다. <신설 2006.5.1.><개정 2018.10.22.>

제6조(학점이수) ① 편입학자는 제5조제1항에서 인정한 학점이외에 본 대학이 요구하는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10.22.>

② 편입학자는 편입학한 학년의 교과과정에 따라 현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 다만, 학과가 지정하는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8.10.22.>

제7조(수업연한) <개정 2005.9.1., 2012.2.1.><삭제 2018.10.22.>

① 편입학한 자의 수업연한은 편입학한 학년의 수업연한과 동일하다. <신설 2018.10.22.><개정 2019.6.26.>

② 전적대학 이수학기의 경우 1학년 후기 편입자는 1학기, 2학년 전기 편입자는 2학기까지 인정한다. 다만, 졸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업연한이 연장될 수 있다.<신설 2018.10.22.>

제8조(졸업기준) ① 편입학한 자는 학칙 제47조에 따라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 및 교양학점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9.1., 2018.10.22.>

② 편입학한 자는 학과의 심의에 따라 해당학과가 정한 전공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, 전공최소이수학점은 전공영역 총 학점의 70%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교육과정 변경에 따라 학과에서 정한 전공 교과목이 폐지되었을 경우에는 유사과목으로 대체 수강할 수 있다. <개정 2006.5.1., 2018.10.22.>

③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성적 중 교양, 전공, 일반선택으로 인정받은 학점은 졸업인정학점에 포함한다. <개정 2006.5.1., 2018.10.22..>

④ <신설 2006.5.1.><삭제 2018.10.22.>

제9조(기타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하여 총장이 정한다.<신설 2018.10.22.>

부칙

(시행일) 이 세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세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세칙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며, 최초 편입학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세칙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8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은 2018학년도 후기 편입학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세칙은 2019학년도 전기 편입학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